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 ·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8. 29.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69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된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민간위탁 필요성

- 어르신 복지 및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뛰어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 건강생활 증진사업
- 개인정보처리
-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강남구 언주로71길 19
- 시설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이용정원 : 35명
- 인력현황 : 15명

(단위: 명)

총인원	센터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운전원
15	1	2	2	7	1	1

- 운영시간 : (월~금) 08시~21시30분, (토) 08시~18시

- 시설규모 : 지상 3~5층(연면적 526.32㎡)

구분	면적(㎡)	주요용도
3층	174.25	사무실, 식당/조리실
4층	174.25	프로그램실, 생활실, 화장실
5층	177.82	프로그램실, 생활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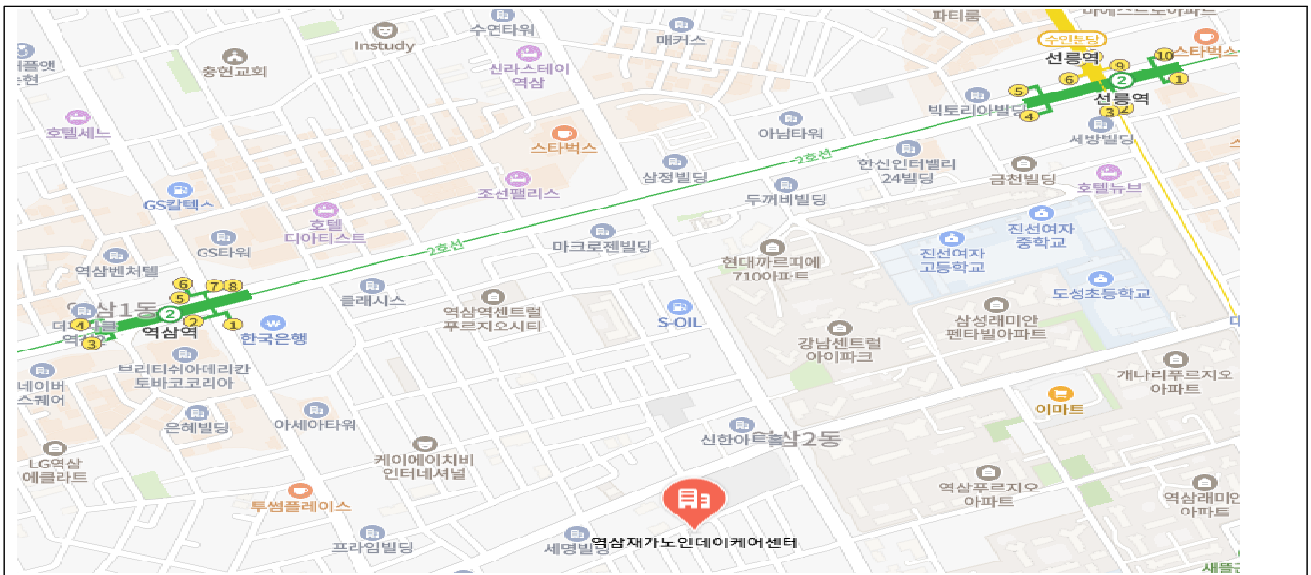


건물전경

생활실

물리치료실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6. 3. 1. ~ 2031. 2. 28.)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비용 : 별도 구비 위탁금 없음

-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 수입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구비로 지급되는 위탁금(운영비, 사업비 등)이 없음

○ 원가계산서

구분		금액(원)	구성비(%)	산출근거	
지출원가	① 인건비 (노무비)	기본급	535,838,000	63	- 시설자체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연장근무수당	25,082,720	3.0	-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종사자 인건비 기준
		퇴직충당금	44,653,168	5.3	- 기본급 및 제수당 총금액 ÷ 12
		국민건강보험료	18,995,457	2.2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보험료	24,076,464	2.8	-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료	12,038,232	1.4	- 고용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료	4,012,744	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장기요양보험	2,459,912	0.3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소계	667,156,697	78.5		
	② 운영비 (경비)	교육훈련비	1,630,000	0.2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임차료	7,989,600	0.9	
		우편통신비	5,264,280	0.6	
		수선유지비	300,000	0.04	
차량유지비		7,800,000	0.9		
공공요금 및 제세		14,655,320	1.7		
기타경비		12,750,000	1.5		
소계	50,389,200	5.9			
③ 사업비	132,518,000	15.6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지출원가 합계(A=①+②+③)		850,063,897	100		
수입원가	④ 이용료	584,009,560	73.7	-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반영	
	⑤ 사용료	0	0	-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 사용	
	⑥ 기타수입	208,718,000	26.3	-	
수입원가 합계(B=④+⑤+⑥)		792,727,560	100	시(市) 보조금 제외	
위탁비용(A-B)		※ 민간위탁비용 없음(시 보조금 포함 시 실질적 수입원가가 지출원가 초과) ※ 2024년도 서울형 인종 데이케어센터 보조금액: 50,000천원 (시비 재배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

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 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

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I.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현재 운영 법인과 의 협약기간은 2026. 2. 28.까지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동의안의 형식 및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II. 주요 사항의 검토

- 금번 재위탁 대상 시설인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2010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음.

-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건강생활 증진사업, ▶개인정보처리,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임. 위탁계약기간은 5년(2026. 3. 1. ~ 2031. 2. 28.)으로 제출되었으며, 위탁 및 위탁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2025. 6. 12. 관련 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 82.3점으로 기준 점수 75점 이상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참고로,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회계점검 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구분	세부 지적내용	조치 사항
2024	- 센터 홈페이지에 공시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검토결과 세입결산서 상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함. 즉,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시한 자료에는 후원금 수입액은 전액 비지정후원금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세입결산서에는 지정후원금 1,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외부에 공시하는 자료를 작성할 때 발생한 단순 오류로 판단되나, 공시자료 작성 시 보다 주의를 기울여 작성할 것을 권고함	권고
2023	-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하면 쿠팡과 지마켓 가격비교 관련 정보가 있으나 관련 증빙자료(화면캡처 등)가 없어 품목, 수량의 동질성과 동량비교 불가능	권고
	- 물품검수보고서 없음 - 세입, 세출 결산서의 예산 중 이월금과 특별회계 부분이 최종추경예산과 불일치 - 세입,세출 결산서의 결산 중 이월금과 특별회계의 결산서 작성 미흡	권고
2022	- 독감보조금 수입 510,000원에 대하여 보조금수입중 시군구보조금으로 분류하였으나 시도보조금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 또한 독감무료접종은 기타운영비(세출과목137)로 지출등록	권고
	- 강남구청과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불용품에 대한 구청승인절차 미비하여 정기적으로 구청에 승인절차 진행할 것을 권고함	권고

(자료: 어르신복지과)

Ⅲ. 종합의견

- 데이케어센터는 주·야간 시간 동안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돌보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관계 법령상 민간위탁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고립 방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공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 됨.
- 향후 수탁자 선정 시 공신력과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두루 살펴 우수한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끝.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69
----------	-----

제출년월일: 2025. 8. 14.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어르신복지과

1. 제안이유

가.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된 역삼재가 노인데이케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필요성

- 어르신 복지 및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뛰어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 건강생활 증진사업
- 개인정보처리
-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강남구 언주로71길 19
- 시설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이용정원 : 35명
- 인력현황 : 15명

(단위: 명)

총인원	센터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운전원	조리사
15	1	2	2	7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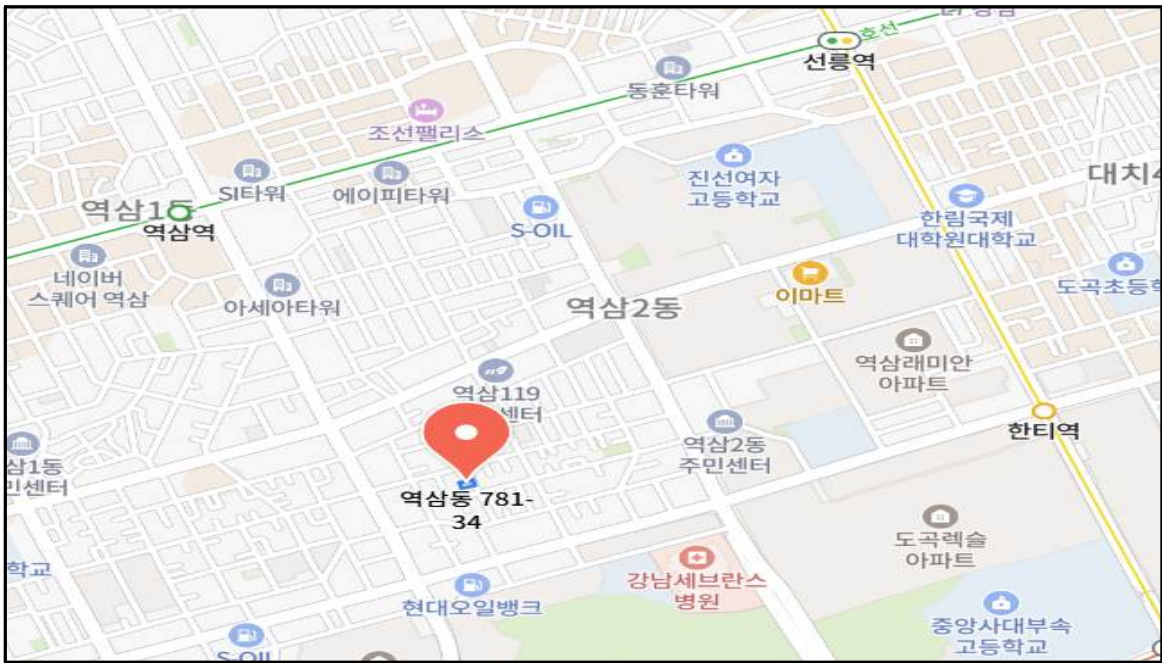
- 운영시간 : (월~금) 08시~21시30분, (토) 08시~18시
- 시설규모 : 지상 3~5층(연면적 526.32㎡)

구분	면적(㎡)	주요용도
3층	174.25	사무실, 식당/조리실
4층	174.25	프로그램실, 생활실, 화장실
5층	177.82	프로그램실, 생활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 현장사진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2026. 3. 1. ~ 2031. 2. 28.)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비용 : 별도 구비 위탁금 없음

-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 수입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구비로 지급되는 위탁금(운영비, 사업비 등)이 없음

○ 원가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출원가	① 인건비 (채광 노무비)	기본급	535,838,000	63	- 시설자체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연장근무수당	25,082,720	3.0	-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종사자 인건비 기준
		퇴직충당금	44,653,168	5.3	- 기본급 및 제수당 총금액 ÷ 12
		국민건강보험료	18,995,457	2.2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보험료	24,076,464	2.8	-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료	12,038,232	1.4	- 고용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료	4,012,744	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장기요양보험	2,459,912	0.3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소 계		667,156,697	78.5	
	② 운영비 (경비)	교육훈련비	1,630,000	0.2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임차료	7,989,600	0.9	
		우편통신비	5,264,280	0.6	
		수선유지비	300,000	0.04	
		차량유지비	7,800,000	0.9	
공공요금 및 제세		14,655,320	1.7		
기타경비		12,750,000	1.5		
소 계		50,389,200	5.9		
③ 사업비		132,518,000	15.6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지출원가 합계(A=①+②+③)		850,063,897	100		
수입원가	④ 이용료	584,009,560	73.7	-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반영	
	⑤ 사용료	0	0	-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무상 사용	
	⑥ 기타수입	208,718,000	26.3	-	
수입원가 합계(B=④+⑤+⑥)		792,727,560	100	시(市) 보조금 제외	
위탁비용(A-B)		※ 민간위탁비용 없음(시 보조금 포함 시 실질적 수입원가가 지출원가 초과) ※ 2024년도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보조금액: 50,000천원(시비 재배정)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

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

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재가복지팀 행정8급 주민지(☎ 02-3423-5924)

비목별 기초계산서

1. 인건비 (노무비)

가. 기본급

(단위 : 원)

직 종	운영인력		근무기간		기준단가 (월 임금) ④	소요금액 ⑤=③×④
	담당과업	종사인원 ③	개월수 ②	누계 ③=①×②		
센터장 (1급 27호봉)	업무 총괄	1	12	12	6,425,200	77,102,400
사회복지사 (4급 10호봉)	복지사업 총괄	1	12	12	3,581,733	42,980,800
사회복지사 (5급 2호봉)	프로그램관리	1	12	12	3,021,567	36,258,800
사무원 (5급 10호봉)	회계관리	1	12	12	3,433,000	41,196,000
간호사	의료 및 건강관리	1	12	12	3,175,000	38,100,000
간호조무사	의료 및 건강관리	1	12	12	2,496,667	29,960,000
요양보호사	어르신 케어	7	12	84	2,525,238	212,120,000
운전원	송영서비스	1	12	12	2,421,667	29,060,000
조리원	식사조리	1	12	12	2,421,667	29,060,000
계	-	15	-	-	-	535,838,000
운영인력 배지치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직급, 호봉)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차대 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나. 제수당

(1) 연장근무수당

(단위 : 원)

직 종	연장근무사유	근무인원 (a)	근무기간			기준단가 (시간당) (e)	소요금액 (f)=d×(e)
			시간(1일당) (b)	근무일수 (c)	소계 (d)=a×b×c		
사회복지사	근무시간초과	1	2	40	80	25,706	2,056,498
사회복지사	근무시간초과	1	2	40	80	21,686	1,734,871
사무원	근무시간초과	1	2	55	110	24,639	2,710,263
간호조무사	토요근무	1	1	51	51	17,919	913,852
요양보호사	토요초과근무	7	1	51	357	18,124	6,470,167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초과	7	1	15	105	18,124	2,854,486
조리원	근무시간초과	1	2	232	464	17,380	8,342,584
계	-	-	-	-	-	-	25,082,721

* 기준단가 계산식 : (기본급 기준단가)/209×1.5

- (2) 야간근무수당 : 해당없음
- (3) 휴일근무수당 : 해당없음
- (4) 연차수당 : 해당없음

다. 상여금 : 해당없음

라. 퇴직충당금

(단위 : 원)

직 종	지급대상인원	월 기본노임	월 상여금	기준단가 (1인당)	소요금액
센터장	1	6,425,200	-	535,433	6,425,200
사회복지사	1	3,581,733	-	298,478	3,581,733
사회복지사	1	3,021,567	-	251,797	3,021,567
사무원	1	3,433,000	-	286,083	3,433,000
간호사	1	3,175,000	-	264,538	3,175,000
간호조무사	1	2,496,667	-	208,056	2,496,667
요양보호사	7	2,525,238	-	210,437	17,676,667
운전원	1	2,421,667	-	201,806	2,421,667
조리원	1	2,421,667	-	201,806	2,421,667
계	15	-	-	-	44,653,168

마. 사회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산출기준 ㉑	공시요율 ㉒ (사업주부담, 2025년 기준)	금 액 ㉓=㉑×㉒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본급+제수당+상여금+ 급여성 임금)	3.545%	18,995,457
국민연금보험료		4.5%	24,076,464
산재보험료		0.72%	4,012,744
고용보험료		2.25%	12,038,232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2.95%	2,459,912
계	-	-	61,582,809

2. 운영비(경비)

가. 여 비 : 해당없음

나. 교육훈련비

(단위 : 원)

구 분 (교육명칭)	교육목적	횟수 ㉑	인원 ㉒	교육여비(1회당)		소요금액 ㉓=㉑×㉒×㉔
				산출식	단가 ㉔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	3	보수교육비	56,000	168,000
	간호사 보수교육	1	2	보수교육비	80,000	160,00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1	7	보수교육비	36,000	252,000
직무교육	중대재해 직무교육	1	15	직무교육(위탁)	70,000	1,050,000
계	-	-	-	-	-	1,630,000

다. 임차료

(단위 : 원)

임차대상	임차목적	임차횟수 ㉑	기준단가 (1회당) ㉒	소요금액 ㉓=㉑×㉒
정수기	음용수 공급	12	86,500	1,038,000
공기청정기	환경관리	12	130,400	1,564,800
인쇄기1	업무용	12	160,000	1,920,000
인쇄기2	업무용	12	64,900	778,800
케어포	업무용	1	1,500,000	1,500,000
주방식기세척기	위생관리	12	99,000	1,188,000
계	-	-	-	7,989,600

라. 우편 통신비

(1) 우편료: 해당없음

(2) 전화·통신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목적	사용수량			기준단가 (1건당)	소요금액
		통/월	월수	소계		
전화요금	업무용	-	12	12	155,000	1,860,000
인터넷 사용	업무용	-	12	12	283,690	3,404,280
계	-	-	-	-	-	5,264,280

마. 유인물비 : 해당없음

바. 소모품비(피복비 등): 해당없음

사. 기타 경비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산 출 내 역		기본단가 (b)	금 액 (c)=(a)×(b)
		산출식	수량(a)		
수선유지비	소방안전점검	300,000원×1회	1	300,000	300,000
	소 계	-	-	-	300,000
차량유지비	주유비(스타렉스2대)	275,000×2대×12개월	12	550,000	6,600,000
	주유비(마티즈2대)	50,000×2대×12개월	12	100,000	1,200,000
	소 계	-	-	-	7,8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41,667×12개월	12	500,000	6,000,000
	상하수도료	112,500×4회	4	450,000	1,800,000
	자동차세	260,000×1회	1	260,000	260,000
	협회비	70,000×4회	4	280,000	1,120,000
	신원보증보험	13,440×3명	3	13,440	40,320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2,200,000×1회	1	2,200,000	2,200,000
	자동차보험	808,750×4회	4	808,750	3,235,500
	소 계	-	-	-	14,655,320
기 타	직원식대지원	90,000×12회	12	900,000	10,800,000
	직원 경조사비	100,000×12회	12	100,000	1,200,000
	직원 피복비	50,000×15회	15	50,000	750,000
	소 계	-	-	-	12,750,000
합 계		-	-	-	35,505,320

3. 사업비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금액
의료비	의료용품 관리비	50,000원×12월	600,000
	소 계	-	600,000
프로그램 사업비	프로그램 사업비	강사료: 50,000원×460회	23,000,000
	프로그램 재료비	300,000×12월	3,600,000
	생신잔치 및 행사비	450,000×12월	6,000,000
	나들이	1,500,000×2회	3,000,000
	보호자 간담회	400,000×2회	800,000
	특별행사비	300,000×6회	1,800,000
	소 계	-	38,200,000
기 타 사업비	강사 간담회	400,000×1회	400,000
	자원봉사관리비	100,000×6회	600,000
	소 계	-	1,000,000
합 계		-	39,800,000

4. 이용료

(단위 : 원)

항목	단가	수량(월 인원)	기간(월)	수입액
장기요양급여수입	등급별 상이	평일 34명 토요일19명	12월	497,002,110
본인부담금 수입	등급별상이	평일34명 토요일19명	12월	87,007,450
계	-	-	-	584,009,560

5. 사용료 - 해당사항 없음(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 사용)

6. 기타수입

(단위: 원)

항목	단가	수량(월 인원)	기간(월)	수입액
장기요양 인력가산금	9,000,000	4명	12월	108,000,000
장기요양 휴일가산금	1,000,000	19명	8일	8,000,000
중·간식비(평일)	7,000	34명	12월(255일)	60,690,000
석식비	4,500	22명	12월(255일)	25,245,000
중·간식비(주말)	7,000	19명	12월(51일)	6,783,000
계	-	-	-	208,718,000